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28호 2021. 5. 27.(목)

##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54호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55호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756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757호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 25
- 사천시 조례 제1758호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 28
- 사천시 조례 제1759호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 30
- 사천시 조례 제1760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 사천시 조례 제1761호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1
- 사천시 조례 제1762호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55
- 사천시 조례 제1763호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69

##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74호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0
- 사천시 규칙 제775호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9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694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91
- 사천시 공고 제700호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2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을 “제104조에 따라 사천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의 사무중”을 “사천시의 사무 중”으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시는”을 “사천시는”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표 1] <개정 2021. 5. 27.>

## 읍·면·동 권한 위임사무(제2조 관련)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	소속직원의 근무지정	「지방공무원법」 제6조	
2	소속직원의 사무 인계·인수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7조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복명서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6조,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제7조	
5	소속직원의 휴가, 사사여행 및 청원 신고 처리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제19조	
6	기록물 등록·분류·보관 등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7	적십자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모금 홍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9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0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11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12	매장, 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13	장애인 등록(취소) 및 등급조정 (재판정), 신청,접수,상담 및 장애인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14	장애상태 확인 및 장애등급 결과 통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	
15	장애인복지카드 교부(재교부) 및 반환, 기재사항 변경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제32조의2,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8조	
16	장애인등록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17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18	장애인증명서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	
19	주민세(균등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0	주민세(재산분)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1	시세관련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른 자료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2	재산세(토지,건물,주택) 및 자동차세 등 과세자료 조사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3	시세의 납세고지서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교부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4	시세 체납액 납부 독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25	시세관련 납세 (과세, 미과세, 징수유예)증명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26	<p>주민등록사무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 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위임한다</p> <p>1.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p> <p>2.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p>	<p>「주민등록법」 제2조</p> <p>「주민등록법」 제30조</p> <p>「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p>	
27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 (동 제외)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부터 제52조, 제77조제8항	
28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수리 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2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사항 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0조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신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동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0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연번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 법규	비고
3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농지전용신고(동 제외)  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3. 농지이용실태조사  4.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및 관리  5.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교부  6.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농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법」 제10조, 제49조,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농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제57조  「농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지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32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4항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  
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사천시민에 대  
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긴급지원 대상자”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사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당·공설자연장지·공설장례시설(이하 각각 “묘지·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장례시설”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가. 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나. 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장사시설 중 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봉안당·자연장지·장례식장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 제2장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자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서에 따른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분묘 및 묘비,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장례에 사용되는 음식 및 물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료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관내 거주자 중 만 100세 이상인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부부단 및 가족장지 이용 시 사용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만 100세 이상인 사람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봉안당을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봉안당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 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유골의 인도)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휴무) 시장은 매년 명절(설·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사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 제3장 화장시설·유택동산

제15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유택동산의 사용 자격 등)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산골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장 봉안당

제17조(사용기간)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기(부부 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8조(사용방법) ①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한다.

②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다.

④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단은 사용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폐하지 않는다.

## 제5장 자연장지

제19조(사용기간)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가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0조(사용대상) ① 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 구역 또는 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시설기준 등)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장례식장

제22조(장례시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염습·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식당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탈의실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장 묘지

제23조(관리) 묘지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읍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사용자격 등) ① 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분묘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는 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은 할 수 없다.

제25조(면적의 제한) 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26조(묘적부의 비치) 시장은 묘지 사용권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기준 등) 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장 묘지 등의 설치

제28조(묘지 등의 설치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표 1]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6조제1항 관련)

### 1. 묘지

#### 가. 사용료

기준	사용료(원)	비고
3.3제곱미터당	30,000	

#### 나. 수수료

종별	단위	수수료(원)	비고
묘지관리	1기	23,000	

### 2. 화장시설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성인(15세 이상)	1구	70,000	500,000	
소인(15세 미만)	1구	50,000	300,000	
개장 유골	1구	40,000	150,000	
태아	1구	35,000	120,000	
그 밖의 적출물	Kg	1,000	3,000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3. 봉안당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관내	관외	
봉안기간 15년	1기	200,000	1,000,000	3회 연장 가능
	2기(부부 등)	400,000	2,000,000	
봉안기간 5년	1기	140,000	사용불가	무연분묘

\* 관내 및 관외의 구분은 최초안치일 기준으로 하고, 2기의 주소가 각각 관내 및 관외로 다를 경우의 사용료는 각각 1기 기준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 봉안당 사용료 환불기준

안치 기간	환급률	안치 기간	환급률	비고
6개월 이하	75%	7년 초과~8년 이하	35%	
6개월 초과~1년 이하	70%	8년 초과~9년 이하	30%	
1년 초과~2년 이하	65%	9년 초과~10년 이하	25%	
2년 초과~3년 이하	60%	10년 초과~11년 이하	20%	
3년 초과~4년 이하	55%	11년 초과~12년 이하	15%	
4년 초과~5년 이하	50%	12년 초과~13년 이하	12%	
5년 초과~6년 이하	45%	13년 초과~14년 이하	10%	
6년 초과~7년 이하	40%	14년 초과~15년 이하	0%	

# 사 천 시 공 보

제 728 호

## 4. 자연장지

구분	기준	면적(m <sup>2</sup> )	사용료(원)	관리비(원)	비고
개인용	1구	0.25	300,000	100,000	-사용료 및 관리비 : 30년 기준  - 1회연장 가능
가족(2구)	1개소	0.50	600,000	200,000	
가족(4구)	1개소	1.00	1,200,000	400,000	
가족(6구)	1개소	1.50	1,800,000	600,000	

## 5. 장례식장

구분	단위	사 용 료(원)		비고
		관 내	관 외	
분 향 실	1m <sup>2</sup> 당(1일)	2,200	3,000	분향1실(97m <sup>2</sup> ) 분향2실(102m <sup>2</sup> ) 분향3실(116m <sup>2</sup> ) 분향4실(128m <sup>2</sup> )
안 치 실	1일	50,000	100,000	
염 습 실	1회	150,000	200,000	
염 습 료	1회	200,000	200,000	
발 인 실	1회	50,000	100,000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표 2] <개정 2021. 5. 27.>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7조제4항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1년”으로, “인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2020년”을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1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임대료 인하율	감면율
100분의 5초과 100분의 10이하	100분의 10
100분의 10초과 100분의 15이하	100분의 15
100분의 15초과 100분의 20이하	100분의 20
100분의 20초과 100분의 25이하	100분의 25
100분의 25초과 100분의 30이하	100분의 30
100분의 30초과 100분의 35이하	100분의 35
100분의 35초과 100분의 40이하	100분의 40
100분의 40초과 100분의 45이하	100분의 45
100분의 45초과 100분의 50이하	100분의 50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55이하	100분의 55
100분의 55초과 100분의 60이하	100분의 60
100분의 60초과 100분의 65이하	100분의 65
100분의 65초과 100분의 70이하	100분의 70
100분의 70초과	100분의 75

제8조의4의 제목 “(코로나19 관련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을 “(코로나19 관련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법」 제75조제2항제1호의 개인”으로, “2020년 8월에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2021년 8월에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기본세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시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제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개인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제3장 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 진흥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자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자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 제2장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제4조(기능)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
3. 기타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 사천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천시체육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야 한다.

## 1. 당연직 위원

가. 시 체육 업무 담당 국장

나. 시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다.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과장

라. 사천시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위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회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0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협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3장 체육진흥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및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3.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4.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업

제17조(전지훈련의 유치 등) 시장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2. 공공체육시설 개방·사용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체육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단체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 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사천시체육회, 사천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제4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제19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구성) 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총괄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장이 되며, 부단장은 부시장, 총괄감독은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감독 및 코치: 경기부 종목별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선수: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제21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대행한다.

③ 총괄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지도·감독 및 관리한다.

④ 지도자(감독, 코치)는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경기총괄, 우수선수 발굴, 영입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한다.

제22조(계약 체결·해지) ① 시장은 단원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급여 등)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제5장 보칙

제25조(사전 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매년 사업계획 수립 시 시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6조(지도·감독)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료·이용료의 감면)”을 “(사용료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한다.(단,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한 차례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지 되었을 때”를 “전혀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와 같은”을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일 까지”를 “취소일까지”로, “위약금 10퍼센트를”을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90% 반환

③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 728 호

[별표 1] <개정 2021. 5. 27.>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삼천포보조체육관 (부대시설 제외)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삼천포 생활체육관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40,000	탁구장, 당구장 개별 적용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동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공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족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단체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	5,000	6,000	
	단체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10,000	15,000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공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벽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일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명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 이상
다목적실	30,000	20,000	2,000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탁구장	30,000	20,000	2,000	
헬스장	35,000	25,000	2,500	

-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 7. 삼천포 생활체육관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탁구장	40,000	30,000	3,000	1명/2시간
당구장	-	-	1,200원	1테이블/10분

- 단체는 10명 이상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8. 중계 방송료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 9.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1㎡당(월액) 1등급 2등급	8,000원 6,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미만은 1㎡로 한다.</li> <li>○ 15일 미만은 2분의 1개월로 한다.</li> <li>○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li> <li>○ 1등급: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li> <li>○ 2등급: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li> </ul>
애드벌룬 및 유사물 계양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표 2] <개정 2021. 5. 27.>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80%	
○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80%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80%	
○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8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8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0%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50%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50%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수영장만 적용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 5% 추가 할인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장 또는 수탁자·임차인(이하 “수탁자등”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 및 임차인(이하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호”를 “호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달하여 대기한 순으”를 각각 “도착하여 기다린 순서”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뜻하며”를 “말하며,”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이상의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를 “해”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과도한”을 “지나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12세”를 “만 12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20조 중 “이내”를 “이내로”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수탁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전대(轉貸)를 하는 경우 사천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수탁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탁자 및 임차인”을 각각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4조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25조 본문 중 “사업운영”을 “사업 운영”으로, “금고업무”를 “금고 업무”로,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수탁자 등”을 “수탁자등”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표 3] <개정 2021. 5. 27.>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할인 이용료(제12조 관련)

구 분		왕복요금	편도요금	비 고
사천시민,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대인	10,000원	-	1명 요금
	소인	7,000원	-	1명 요금
국가보훈대상자		12,000원	-	1명 요금
장애인		12,000원	-	1명 요금
경로우대자		13,000원	-	1명 요금

- ※ 1. 이용료 할인은 일반캐빈 왕복 요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사천시민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3.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대표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은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명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이용료를 할인하여 적용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란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할인은 중복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인프  
라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  
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  
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  
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2. “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
3.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4.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시·군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5.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6.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8.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9.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

제7조(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제3장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설치)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시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1조(중간지원조직 구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여 하부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중간지원조직 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사무국장, 사무원 등의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무의 인계·인수를 위탁 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제4장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운영

제16조(추진단 구성) 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운영한다.

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액션그룹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추진단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8조(추진단 운영) ① 추진단은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으로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단에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9조(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시와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된다.

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제2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진단의 사업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추진단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추진단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전담부서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 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추진위원회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
3. 제반 사업에 대한 조사·평가 및 중·장기 발전계획
4. 추진단 운영·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민간위원장(추진위원 간 호선 또는 추진단장 겸임 가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2. 신활력사업 액션그룹 대표자
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
4. 지역 주민의 대표
5.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2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위원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장은 신활력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17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사천시주소정보위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5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5. 27.>

(앞 쪽)

제 호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사 천 시

60mm×90mm [백상지 150g/m<sup>2</sup>]

(색상: 연하늘색)

(뒤 쪽)

##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사  
천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토지·건  
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규칙 제77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같은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15조”로, “잠수입으로 세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7조 중 “제17조”를 “제27조”로 한다.

제8조 중 “제24조”를 “제21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사 망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신 고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및 기간 등		공설 묘지	분묘위치									
		공설 봉안당	사용사유	※ 공공사업명을 기재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15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15년간)							
		2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15년간)							
		3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15년간)							
		공설 자연 장지	최초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30년간)						
		1회연장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30년간)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기간 연장 시 안치번호(일자) : 제 호( . . . )								
		공설 장례 식장	분 향 실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안 치 실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까지									
기타시설	염습실(     ), 발인실(     )											
유의사항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 (기간연장)신고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span>년    월    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margin-top: 10px;"> <span>신고인</span> <span>(서명 또는 인)</span> </div>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사 망 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사망일자									
신 고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관계				
신 고 내 용	신고시설					신고번호	제 호			
	공설묘지	분묘위치			사업명					
	공설봉안당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최초 / 1회, 2회, 3회 연장)						
	공설자연장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최초 / 1회 연장)						
공설장례식장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기간연장)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가.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나. 사용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사천시로 위임됩니다.
3.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 신고인은 시장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사천시 누리원 내 유택동산에서 산골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 할 수 있습니다.
4.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봉안당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습니다.
6. 공설자연장지에는 꽃장식물 및 제단, 비석 등을 설치 할 수 없습니다.
7. 신청인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망자	성명	(남/여)	
	주소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입금계좌번호		
신고사항	사용권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실사용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 년간)
납부한 사용료 등		반환신청금액	
반환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비 고	반환금액은 계좌입금 함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도 신청서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남/여)	
	주 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유			
구비서류	신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 공설묘지 분묘를 개장하려는 사람은 개장신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골의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5. 27.>

공설 장사시설 유골 인수증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공설묘지 <input type="checkbox"/> 공설봉안당 <input type="checkbox"/> 공설자연장지 <input type="checkbox"/> 공설장례식장		
신고일자(번호)			
사 망 자	성 명	(남/여)	
	주 소		
	사망일자		
인 수 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인수일자			
<p>「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골의 인수증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인수자 <span style="float: right;">(서명 또는 인)</span></p> <p>사천시장 귀하</p>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5. 27.>

## 공설 장사시설 화장 잔류물 수거대장

결 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협조		

일 자	화장건수	치금수거량(kg)		인체보철물(kg)		수거자
	금 일	금 일	누 계	금 일	누 계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규칙 제77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7일

##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5조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사업소분)”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제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10% 공제”를 “공제액”으로 하고, 왼쪽 하단에 연도  
별 연납공제율을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공고 제2021-694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3.31.)에 따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 마련(안 제16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7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53,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천시가”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은”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으로, “따른 심의위원회의”를 “해당하는”으로, “의회에 위원추천”을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지도·감독”을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로, “경영실적평가”를 “경영실적 평가”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1조제1항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요청 받은 날로”를 “요청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재무건전성”을 “재무 건전성”으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요청 받은”을 “요청받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사천시</u>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조례는</u> ----- ----- ----- ----- -----.</p>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u>시가</u>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p>	<p>제2조(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 ----- --- <u>사천시</u>(이하 “시”라 한다)- ----- ----- -----.</p>
<p>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① <u>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u>(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u>시장은</u>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p>	<p>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구성·운영) &lt;삭 제&gt;  ① <u>사천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사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u>(이하 “심의</p>

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 담당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  
-----해당하는 -----  
-----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  
-----.

② -----  
----- 부서장-----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제1항제2호 -----  
--- 다음 -----  
-----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

1.·2. (생략)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4. (생략)  
 ⑥ (생략)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4. (생략)  
 ② (생략)  
 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1.·2. (현행과 같음)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  
 ----- 경영실적 평가-----  
 -----  
 -----.

1. ~ 4.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관련 분야  
 -----  
 -----  
 -----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날부터 15일 이내에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요청받은 날 -----  
-----  
-----  
-----  
-----.

제14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 재무 건전성 -----  
-----  
-----  
-- 관계 서류 -----  
-----.  
-----  
관계 서류 ----- 요청받은 -----  
-----  
-----  
-----.

<삭 제>

<신 설>

제16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  
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  
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관 련 법 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공고 제2021-700호

「사천시 지하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7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감경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이행보증금 감경 조항 신설(안 제14조의3)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건설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260,  
FAX: 831-6035)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지하수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을 “성(性)이 위촉위원”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채움”을 “보궐”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두되 업무담당”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 규정”을 “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제10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하수”를 “시장이 지하수”로,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를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두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시장은 30일”을 “30일”로, “통지”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u> <u>필요</u>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필요</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 략)</li> <li>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u>시장</u>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li> <li>3. (생 략)</li> </ol>	<p>제2조(정의) ----- ----- <u>뜻</u>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 -----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u>위촉직 위원의</u> 경우에는 특정 <u>성별</u>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p>	<p>제5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사람</u> ----- -----.</p> <p><u>위촉위원의</u> ----- <u>성(性)</u>이 위촉위원 -----</p>

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1. (생략)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채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사천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

----- 않도록 해야 ---  
-----.

1. (현행과 같음)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
3. -----  
-- 풍부한 사람
4. ----- 지하수 관련 ----- 임  
직원
5. -----  
-----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 제2조-----  
----- 사람

③ -----  
----- 보궐 -----  
---- 전임자 임기-----  
-----.

제6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두며, 간사는

당 팀장이 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생략)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0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 법 제30조의2-----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세입) ----- 법 제30조의2제2항-----  
-----.

제10조(세출) -----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2. (생략)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5. (생략)

6.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3. 국가 또는 사천시가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생략)

② ~ ⑤ (생략)

제13조의2(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관리

-----.

1. 2. (현행과 같음)

3. 제3조에 따른 -----

4. 5. (현행과 같음)

6. ----- 시장이 지하수 -----  
--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

제13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등)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시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쌓아두거 -----  
-----.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제14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분명하게 밝혀 -----  
-----.

제14조의3(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

<p>제16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생략)</p> <p>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u></p> <p><u>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인 경우: 100분의 30</u></p> <p>제16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 30일 -----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u></p> <p><u>&lt;삭 제&gt;</u></p>
---	---

# 사 천 시 공 보

제728호

## 관 련 법 규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